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8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. 9. 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2.9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58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(2022. 9. 2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건강증진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치매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 개정함.

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□ 주요내용

가. 「치매관리법」 개정으로 ‘마포구치매지원센터’에서 ‘마포구치매안심센터’로 명칭 변경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로 규정되는

사항 삭제(안 제5조2항, 제5조3항, 제9조, 제10조)

다. 불필요한 인용 조문 삭제(안 제15조, 제16조)

□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2. 7. 28.~ 8. 17. (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□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치매관리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대 고령사회에서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적을 반영하고자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마포구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에서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
- 안 제1조~안 제2조의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을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에 맞게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의2 ~ 안 제5조의3, 안 제5조의4제5항, 제9조, 제10조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하고 있어 유

사· 동일 사항으로 삭제하였음.

- 아울러, 기타 조항들의 문구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등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불분명하고 모순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대 사회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치매 질환의 국가 책임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마련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·정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「치매관리법」이 개정되어 제출되었음.
- 이에 그동안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목적 및 기능 등을 재정립 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임.
- 다만, 「치매관리법」이 2019년 4월 30일 개정되어 후속조치사항으로 자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개정 시의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<마포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>

- 시설위치 : 마포구 대흥로 24길50, 3층
 - 시설규모 : 1,236 m^2 (사무실, 프로그램실 3, 강당, 쉼터, 가족카페)
 - 사업대상 : 마포구 주민
 - 운영방법 :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탁운영
 - 위탁기간 : 2021. 1. 1.~2023. 12. 31.
 - 소요예산 : 1,476,760천원
(국비 686,400천원, 시비 410,774천원, 구비 379,586천원)
 - 마포구치매안심센터 재계약 현황
 - 2007. 7. 20. 최초계약
 - 2007. 7. 20. ~ 2008. 12. 31. (수탁기관: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)
 - 2009. 1. 1. ~ 2011. 12. 31.: 재계약(수탁기관: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)
 - 2012. 1. 1. ~ 2014. 12. 31.: 재위탁(수탁기관: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)
 - 2015. 1. 1.~ 2017. 12. 31.: 재계약(수탁기관: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)
 - 2018. 1. 1. ~ 2020. 12. 31.: 재위탁(수탁기관: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)
 - 2021. 1. 1. ~ 2023. 12. 31.: 재계약(수탁기관: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)
- ※ 2024년 수탁기관 재위탁 진행예정

[관 계 법 령]

「치매관리법」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"치매관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④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 ① 시·군·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(이하 "치매안심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
2.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
3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4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5.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
6.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

6의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
7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,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(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안내할 수 있다.

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·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